

## 2025년 K-STAR기업 육성사업 공고

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시험인증 및 연구개발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 중심의 종합기술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「K-STAR기업 육성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11. 3.

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

### 1 사업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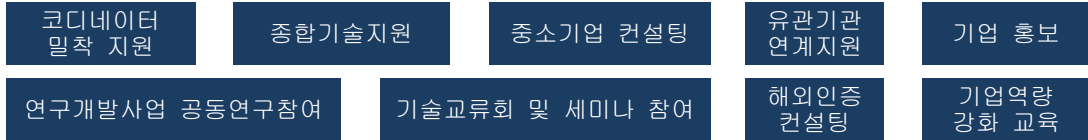
-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의 현장 중심의 기업 종합기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개발 제품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
  - 코디네이터 1인 현장전담 지원(상황에 따라 기업별 최대 2인 지원), 시험·분석·평가·컨설팅 등의 기술지원을 통한 제품개발 애로기술 해결 및 상품화
  - KTL의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기술 혁신형 수출 중견·대기업으로 성장

#### □ 지원 대상 분야

- (기술분야) 기계, 재료, 화학공정, 전기·전자, 정보, 통신, 보건의료, 환경, 에너지·자원, 원자력, 건설·교통, 항공·해양 등
- (서비스분야) 공장심사, 기술진단, 컨설팅, 시험·분석·평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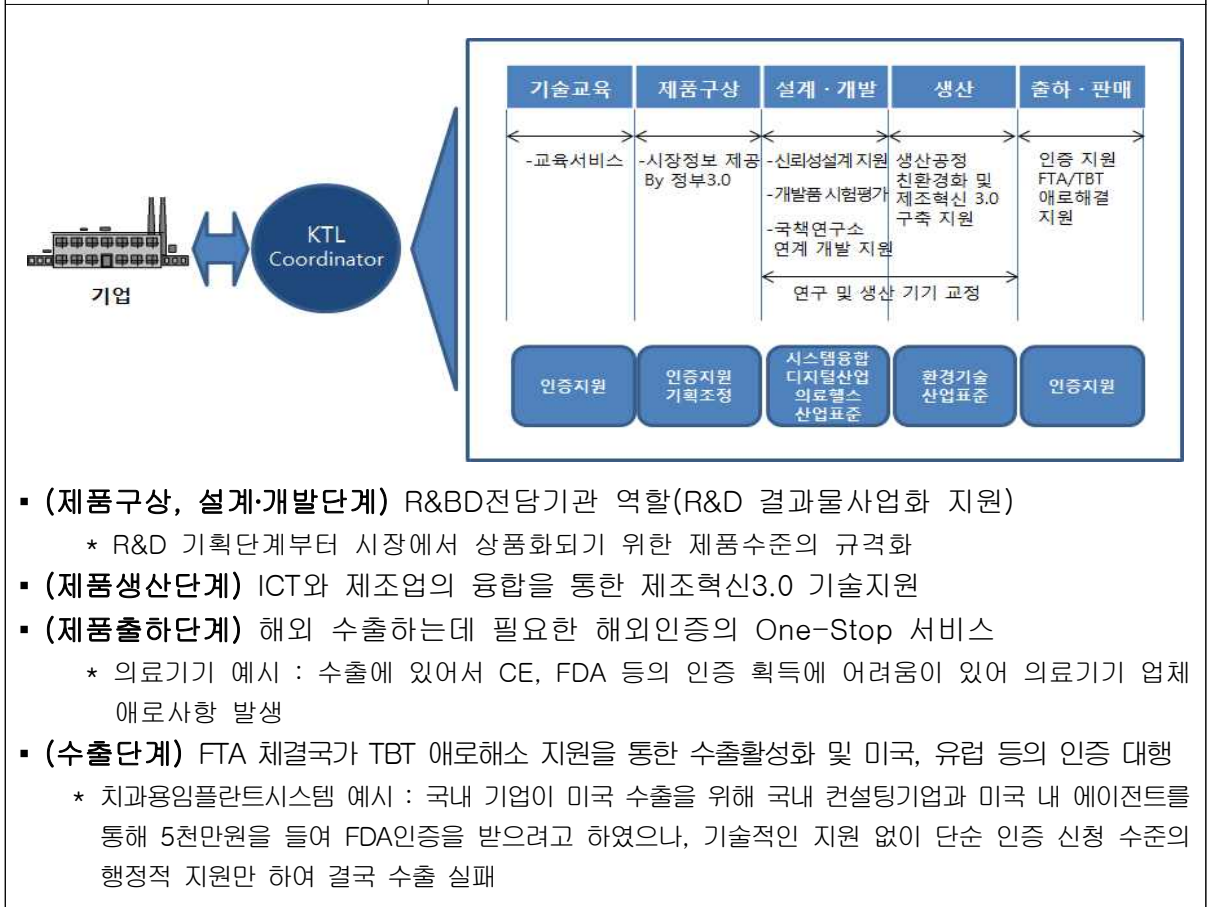
## □ 지원 내용

- (지원규모) 4개 기업 선정
- (지원내용) 제품 구상-설계-생산-수출의 소영역에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(최대 2년)



### <K-STAR기업 육성사업 지원 내용>

지원 프로그램	내 용
코디네이터 밀착 지원	기업 전담 코디네이터 파견,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
기업 생산 현장 기술 지원	제품의 설계&생산 애로기술 해결, 시험평가 지원
기술 교육	인력 교육, 제품&시험 규격 제공, 기술 교류
수출 지원	인증지원, FTA/TBT 대응지원



○ (사업비 지원)

- 1차년도는 연간 1억원 이내에서, 2차년도는 연간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(단, 참여기업이 해당년도 지원결과 평가에서 70점 이상 '성공' 평가를 받을 경우에만 다음연도 사업 수행)
- 사업비는 시험원의 지원비 70%, 참여기업의 현금 분담 30%로 구성 (사업이 중단되는 경우, 상호 협의 하에 시험원은 참여기업에게 기업 분담금 집행 잔액 반납)

<K-STAR기업 육성사업 사업비 구성 >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연차	KTL지원	기업분담금	총액
1차년도	70	30	100
2차년도	50	20	70

## 2 신청자격

### □ 기업요건

- (중소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
- (중견기업)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

### □ 신청제외 대상 (접수마감일 기준)

-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
\* 기업의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직간접 수출액, 연구개발비, 외투비율 등
-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  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
 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  -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, 신용평가등급 'BBB'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\*)  
\* 인정 신용평가기관 : 한국신용평가, 한국기업평가, NICE 평가정보(주), 한국평가데이터(주), (주)나이스디앤비, (주)이크레더블, 서울평가정보(주)
  - 자본전액잠식, 최근년도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“한정의견, 부정적의견, 의견거절”인 기업
-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임금체불 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
- ⑤ 최근 5년간 유사 내용의 국가 기업지원사업 수행 실적이 있거나, 현재 선정되어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

### □ 기술 요건

- 기업 보유기술의 수출지향성, 기술혁신성 등 글로벌 성장의지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
- 기존 제품 상품화 및 개발 신제품의 설계·생산 과정 중 애로기술 해결이 필요한 기업

### 3 선정기준

#### □ 지원기업 선정기준

○ 지원기업의 역량, 지원 기술의 적합성 및 효과성

구 분		선정기준	평가기준
서류 평가	기업 역량	매출성장에 대한 의지 및 노력	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
		R&D 역량	연구전담 인력 및 시설, 기업부설연구소, CEO 의지 등
	적합성	기술지원 내용의 적합성	기술의 난이도, 대외 환경을 비교한 시장성을 평가
	효과성	직/간접적 효과	시험원 기술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, 경제, 파급 등에 대한 직/간접적 효과
	활용성	성과의 활용	시험원 지원성과의 다각적 활용 계획

- 사업 취지(기업실적 & KTL성장)에 적합한 아이템·기술을 보유한 기업
- KTL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산업군 또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
-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성과와 실적이 구체적인 기업

### 4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5. 11. 17(월) ~ 2025. 11. 21(금), 18시까지

□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 후 일부 서류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

- 이메일 제출처: 양은혜 행정원 (이메일 : eh7364@ktl.re.kr)

- 우편 제출처 : (우)52852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 (충무공동, 한국산업기술시험원),  
마케팅총괄센터 양은혜 행정원

□ 제출서류 : [붙임1] 지원신청서 체크리스트 참조

#### □ 유의사항

※ 모든 제출서류(스캔본)는 이메일 송부 필수이며,  
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참여의사 확인서, 재무제표는  
이메일 제출 후 우편으로 원본을 별도 제출해야함.

## □ 문의처

담당자	인증사업본부 마케팅총괄센터 양은혜 행정원
이메일	eh7364@ktl.re.kr
전화	055-791-3293

## 5 선정절차

구분	일정	비고
공 고	`25. 11. 3(월) ~ 11. 14(금)	▪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홈페이지 공고, 기존 고객사 및 유관기관 홍보 협조 요청
접 수	`25. 11. 17(월) ~ 11. 21(금)	▪ 이메일 접수(지원신청서 등 서류 제출)
서면평가 (1차)	`25. 12. 1(월) ~12. 5(금)	▪ 신청자격 검토 및 기업 역량 평가 ▪ 1차 기업 선정(2배수)
현장평가 (2차)	`25. 12. 10(수) ~ 26. 1. 7(수)	▪ 1차 선정기업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
최종평가 (3차)	`26. 1. 26(월) ~ 1. 30(금)	▪ 최종평가는 발표평가로 진행 예정 ▪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▪ 최종 육성기업 확정
협약체결	`26. 2월중	▪ 협약식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현장평가, 최종평가 등 세부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추후 재공지</li> <li>▪ 심의·평가위원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</li> <li>▪ 현장평가는 기업 기술분야에 적합한 공장심사 전문가 2인 이내로 구성하여 현장 방문 후 실시</li> </ul>		

\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## 6 유의사항

□ **신청마감** :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,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 이후 7일 이내(11.28, 금)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
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□ **선정취소** : 신청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될 수 있음